울산광역시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621

제출연월일 : 2008. 4. .

발 의 자 : 박 홍 규의원외 2명

1. 제정이유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전통문화 발굴과 보존 및 발전을 도모하여 울산중구의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 및 육성 대상 문화원은 울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울산광역시 중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으로 함(안 제2조)

나. 문화원의 사업을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보존, 전승, 향토사의 조사와 연구, 지역전통문화의 교류 및 지역문화행사 개최 등의 문화활동을 하도록 하고, 운영에 관한 경비를 문화원 자체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문화원은 문화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미리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이행토록 규정함(안 제6조)

라.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따라 사용여부와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하도록 하고, 관계 장부 열람과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근거법규

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5조, 제19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의거 지방문화원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울산광역시중구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육성대상 문화원) 이 조례가 정하는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은 법 제4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으로 한다.

제3조(사업과 경비의 보조) ① 문화원의 사업은 법 제8조에 규정된 다음의 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그 밖의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② 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경비는 문화원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제1항의 사업비와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제4조(연구·조사·문화행사의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개최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

다.

제5조(협조 등) 구청장은 문화원으로부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문화원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 목적 사용여부 및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문화원에 대하여 관계 장부 열람과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도·감독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621)

1. 의 안 명 :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08. 4. 11(금)
나. 제 출 자 : 박홍규 의원외 2명
다. 위원회 회부 : 2008. 4. 16(수)
라. 위원회 상정 : 2008. 4. 21(월)

3.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홍규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전통문화 발굴과 보존 및 발전을 도모하여 울산중구의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지원 및 육성 대상 문화원은 울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울산광역시 중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으로 함(안 제2조)

○ 문화원의 사업을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보존, 전승, 향토사의 조사와 연구, 지역전통문화의 교류 및 지역문화행사 개최 등의 문화활동을 하도록 하고, 운영에 관한 경비를 문화원 자체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 문화원은 문화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미리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이행토록 규정함(안 제6조)

○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따라 사용여부와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하도록 하고, 관계 장부 열람과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강종진)

○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 으로써 울산중구의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제15조, 제19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 및 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미 제주특별도를 비롯한 3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지방문화원진흥법」의 설립취지에 적합함으로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봄

5. 심사결과 : 원안 가결